

[사 건 명] 행심 2017 - 4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교내봉사 40시간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동급생인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2016. 12. 22.경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되었고, 그 결과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교내봉사 40시간 및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동반교육)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17. 1.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2016. 12. 16.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학생으로 특정된 ▲▲▲이 쉬는 시간에 다른 급우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각자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다가와 “우리 인생처럼 망했네” 라고 비아냥거리며 감성적으로 예민한 청구인의 감정을 자극하여 싸움을 도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화가 나서 ▲▲▲의 상박부위를 한 대 때리자 ▲▲▲도 이에 대항하여 청구인의 상박부위를 때려 진짜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의 안경 쓴 얼굴을 주먹으로 스치면서 다치게 되었지만 청구인도 이 싸움으로 좌측상완부 염좌 및 좌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원인 및 동기 등 당시 상황이 심도 있게 조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을 일방적인 가해 학생으로 특정하여 처분한 것은 편파적인 처분이며 부당하므로 처분을 취소하여 주길 바란다.

##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발생원인 및 동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 청구인 및 피

해학생, 학급의 학생들에게 진술을 받아 충분히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한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당시 제출된 적이 없으며 우측 수부 열상은 청구인이 가해행위를 하면서 다친 상처이고 우측 수부 열상 치료를 받고 학생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담임교사와 학생부장이 피해학생이 때린 팔뚝 부위에 대해 물어봤을 때 청구인은 괜찮다고 하였다.

다. 평소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팔뚝 부위를 서로 때리는 장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며, 피해학생 역시 자기가 말장난을 하고 청구인이 팔뚝을 때릴 당시 장난인줄 알고 최대한 막으면서 청구인을 진정시키려 하였고, 학급 친구들도 평상시처럼 서로 장난치는 줄 알고 말리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계속 막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학생 우측 눈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다.

라. 청구인은 피해학생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학생은 눈 주위 대략 7~8군데가 찢어져 대략 35바늘 정도를 꿰매는 상해를 입혔으므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며, 이에 청구인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한 것으로 청구인의 처분 조치는 정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 12. 16. 3교시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청구인은 친구들과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게임에 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피해학생(▲▲▲)이 “우리 인생처럼 망했네” 라고 하였고, 이 말에 옥해 피해학생 팔뚝 부위를 쳤고 이에 피해학생도 청구인의 팔뚝 부위를 쳤고, 이 후 청구인은 피해학생 팔뚝 쪽을 7~8회 치고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학생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학생의 안경이 깨지면서 피해학생은 눈 주위를 다쳐 대략 35군데 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리거나 때리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상해에도 해당된다.

결국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위법/부당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이 발생될 우려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삼아 청구인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교내봉사 40시간 및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동반교육) 처분은 적절하다 할 것이며,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